

제도 개요

- 미래성장동력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성장동력·원천기술 분야의 연구개발비와 이를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비 세액공제
- 기업이 투자한 비용을 해당 과세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비율 한도 내 세액공제

* (대상) '17년도 분부터 신청가능
(이월공제) 5년 ('20년도 분부터 10년으로 연장)

* 추진근거 :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, 제25조의5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, 제22조의9
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, 제13조의8
신성장동력·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
신성장동력·원천기술심의위원회 운영세칙

신성장동력·원천기술 세액공제

제출 방법 및 문의처

공문 및 신청서를 이메일 제출 후 원본서류 우편발송

- (이메일) newgrowth@kiat.or.kr
- (제출처)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F
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인증팀
- (문의처) 02-6009-3422~3





신성장동력·원천기술 연구개발비

· 소개

신성장동력·원천기술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에 대해 공제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최대 40% 한도 내 공제

· 세액공제율

과세연도	'17년	'18년	'19년	'20년
중소기업	30%		30+α% (최대 40%)	
코스닥상장 중견기업	20+α*% (최대 30%)		25+α% (최대 40%)	
중견·대기업	20+α% (최대 30%)		20+α% (최대 30%)	

*α=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신성장동력·원천기술 연구개발비의 비율×3

· 공제요건

-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[별표 7]의 신성장동력·원천기술에 해당
- 일반 연구개발비와 구분경리

· 공제대상



- **(인건비)** 신성장동력·원천기술 전담부서의 전담인력 (참여연구원, 직접지원인력)
- * '19년도분부터 일반 연구개발 부서의 신성장동력·원천기술 전담인력 인건비 인정



- **(재료비)** 견본품, 부품, 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
- * '19년도분부터 공통재료비 일부 인정(시행규칙 제7조제14항 참조)



- **(위탁/공동연구개발비)** 대학, 공공연, 기업, 연구개발 서비스업자에게 위탁(재위탁 포함)한 비용 (참여연구원, 직접지원인력)
- * '20년도분부터 내국법인이 지배하고 있는 외국연구기관 포함

· 제출서류

- 인정신청서, 사업계획서, 연구개발비 명세서, 추가자료
- * '20년도분부터 연구개발계획서·보고서, 연구노트 작성 및 보관



신성장동력·원천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비

· 소개

신성장동력·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해 공제 요건을 만족할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 공제율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

· 세액공제율

기업유형	중소기업	중견기업	대기업
공제율	10%	7%	5%

· 공제요건

-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[별표 8의8]의 사업화시설에 해당
- 직전연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5% 이상 ('19년도분부터 2%이상)이면서 아래요건 중 1개 만족
 - ① 신성장동력·원천기술 연구개발비 투자 비중이 전체 연구개발비 대비 10% 이상
 - ② 해당 기술 관련 최초로 설정 등록받은 특허권 보유
- 해당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연도 대비 감소하지 않아야 함

· 공제대상

- 해당 과세연도의 신성장동력·원천기술 사업화 시설투자비

· 제출서류

- 인정신청서, 사업계획서, 자산 명세서, 연구개발비용 명세서, 신성장동력·원천기술 연구개발비용 명세서 또는 특허등록 원부, 추가자료

※ (참고) 공제액의 반환

- 상시근로자수 유지 불이행 시 감소인원 1인당 1천만 원 반환
- 사업화시설의 전용 시 공제액에 이자상당가산액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



조사·심의절차



신청서 제출(신청기업→전담기관)

- 제출서류 : 신성장동력·원천기술심의위원회 운영세칙 별지 서식 등
- 연구개발비 : 제1호, 제3호, 제4호, 추가자료
- 시설투자비 : 제2호, 제3호, 제5호, 추가자료



사전조사(전담기관)

- 서면평가: 신청서 검토 및 보완요청
- 발표/현장실사: 보완내용설명(기업), 공제요건, 지출내역 증빙 확인
- 종합의견서 확정 후 심의위원회 안건 상정



심의위원회 개최(산업부, 전담기관)

- 신성장동력·원천기술 세액공제 대상금액 최종심의 (분기별 1회 예정)



심의결과 통보(산업부)

- 기재부 및 신청기업에 심의결과 통보 (의결 후 15일 이내)

※(처리기한) 신청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일로부터 6개월 이내 (단, 자료보완 소요기간 제외)